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042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0428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280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정필규

피고, 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영, 정옥진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제헌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9. 1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280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1,271,2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C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E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C과 2018. 1. 25. E이 발행하는 신주 50만 주를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인수하되(이하 'F 명의 50만 주'라고 한다), 1년 후 원고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E에 2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과 2018. 3. 19. E이 발행하는 신주 50만 주 중 40만 주를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로 인수하되(이하 'J 명의 40만 주'라고 한다), 1년 후

원고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E에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2018. 11. 22.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G(100만 주), 주식회사 H(100만 주), 주식회사 I(50만 주) 명의의 E 주식 합계 250만 주와 피고 B이 소유한 E 주식 50만 주를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갑 제11호증).

2) 원고는 2019. 1.경 피고 C에게 F 명의 50만 주와 J명의 40만 주를 각 40억 원 및 32억 원(주당 8,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9. 1. 23. 원고에게 'F 명의 50만 주의 미지급 매매대금 20억 원은 2019. 1. 25.까지, J명의 40만 주의 미지급 매매대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2019. 1. 31.까지, 20억 원은 2019. 2. 15.까지 각 지급하고, 그 담보로 E 주식 150만 주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16호증).

3) 피고들은 2019. 1. 30. 원고에게 '피고 C이 F 대표 명의 또는 E 주식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피고 B도 원고에게 E 주식 1,274,046주(이하 '피고 B 명의 주식'이라 한다)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되, 피고 C이 F 명의 E 주식 100만 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고 B은 피고 B 명의 주식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4) 피고 C은 2019. 2. 25. 원고에게 '2019. 2. 28. 중도금수령액 중 35억 원을 매매대금잔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 중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E 주식 50만 주를 25억 원의 차입금 승계조건으로 2019. 3. 4.까지 드릴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의 E 주식 처분

1) 피고 C은 2019. 2. 1. 피고 C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200만 주(F 105만 주, 주식회사 H 5만 주, 주식회사 G 25만 주, 주식회사 I 50만 주, 주식회사 K 15만 주)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22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당일 계약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2. 28. 체결된 변경계약에 따라 같은

날 중도금 30억 원(최초 계약시에는 90억 원이었다)을 지급받으면서 F 명의의 E 주식 30만 주를 양도하였다.

2) E에 대한 거래정지 결정이 있음에 따라 피고들과 D은 2019. 3. 29. 주식양수도계약을 변경하여 이미 양도한 E 주식 30만 주 외에 피고 C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125,000주와 피고 B 명의 주식 중 698,663주를 D에 양도하고 D은 이미 지급한 52억 5,000만 원 외에 잔금 32억 9,465만 원을 2019. 6.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하기로 정한 E 주식 698,663주 중 381,776주를 2019. 6. 28.에, 154,584주를 2019. 7. 18.에 각 D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300만 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C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 1. 30.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F 명의 주식 100만 주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2019. 1. 30.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이 F 명의 주식 100만 주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 B 명의 주식 1,274,046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서상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채 D에 E 주식 200만 주를 매도하고 피고 B 명의 주식 중 546,360주¹⁾를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961,271,200원(= 546,360주 × 주당 5,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파기된 후 2019. 1.경 체결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들은 2019. 1. 30.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주장의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F 명의 주식 100만 주 또는 피고 B 명의 주식 1,274,046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C이 2019. 2. 1. 원고에게 F 명의 주식 100만 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의 채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상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한 바 없다.

3. 판단

가.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중개하였던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계약금 5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의 1, 을 제7호증), ③ 이 사건 각서에도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채무에 갈음하여 F 또는 피고 B 명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F 또는 피고 B 명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서의 하단 피고 B 서명 바로 앞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B은 위 '보증인' 기재가 이 사건 각서 작성 후 가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20. 11.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의 보증채무의 이행은 '피고 B 명의 주식 1,274,046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B 명의 주식 1,274,046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 제공과는 별도로 이 사건 각서상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F 또는 피고 B 명의 주식에 대한 양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 주장의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 피고 C으로부터 F 명의 증권카드 및 출고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확인한 L로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상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각서상 채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F 명의 주식 100만 주 또는 피고 B 명의 주식 1,274,046주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담보미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우

판사이영창

판사김세종

1) 피고 B이 D에 양도한 E 주식 수는 536,360주(= 381,776주 + 154,584주)인데, 원고는 546,360주로 잘못 계산하고 있다.